

파주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458
----------	-----

제출년월일 : 1999. 3. .

제 출 자 : 파 주 시 장

□ 개정이유

- 가. '98. 12. 31일 법률 제5615호로 지방세법이 개정됨에 따라 개정된 법률안을 조례에 반영하고
- 나. 지방자치단체가 특정한 행정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신고의무규정을 두어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조례를 행정규제정비계획에 따라 폐지하여 주민의 불편사항을 해소하고자함.

□ 주요골자

- 가. 배기량 2,000cc초과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의 자동차세율을 종전에는 배기량에 따라 cc당 250원 내지 370원으로 구분하여 부과하던 것을 앞으로는 cc당 220원으로 단일화하는 등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의 자동차세율을 하향조정함(안제39조).
- 나. 당초 3월, 6월에 납세자의 신청에 의하여 자동차세의 연세액을 일시에 납부하던 것을 1월에도 신청할 수 있도록함(안제40조).
- 다. 조례에 신고규정을 두어 국민에게 의무를 부과하던 조례중 일부를 행정규제정비계획에 따라 폐지하여 국민의 불편사항을 해소하고자함(안제34조, 제49조, 제81조, 제94조, 제100조).

파주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

파주시시세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4조중 제1호 및 제5호 내지 제6호를 각각 삭제하고 제2호를 제1호로, 제3호를 제2호로, 제4호를 제3호로 한다.

제39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승용자동차

영업용		비영업용	
배기량	씨씨당 세액	배기량	씨씨당 세액
1,000씨씨이하	18원	800씨씨이하	80원
1,500씨씨이하	18원	1,000씨씨이하	100원
2,000씨씨이하	19원	1,500씨씨이하	140원
2,500씨씨이하	19원	2,000씨씨이하	200원
2,500씨씨초과	24원	2,000씨씨초과	220원

제40조제3항중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를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기간중에”로 하고 동조에 제1호 내지 제3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1월중에 신고납부하는 경우 : 1월 16일부터 1월 31일까지
2. 제1기분 납기중에 신고납부하는 경우 : 6월 16일부터 6월 30일까지
3.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분할납부기간에 신고납부하는 경우 : 3월 16일부터 3월 31일까지 또는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제49조제1항중 제1호 내지 제2호를 각각 삭제하고 제3호를 제1호로, 제4호를 제2호로 한다.

제81조제7항중 제2호 내지 제3호를 각각 삭제한다.

제94조제1항중 제1호 및 제5호 내지 제6호를 각각 삭제하고 제2호를 제1호로, 제3호를 제2호로, 제4호를 제3호로 한다.

제100조제2항중 제1호 및 제5호를 각각 삭제하고 제2호를 제1호로, 제3호를 제2호로, 제4호를 제3호로, 제6호를 제4호로, 제7호를 제5호로 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적용례) 제39조제1항제1호, 제40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1999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③(일반적인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면 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지방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